

<참고>

관련 규정

□ 위탁기업 준수사항

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 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0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음,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음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0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 **공정위 고시 이율 : 지연이자 연 20%, 어음할인료 연 7.5%, 어음대체수수료 연 7%**

법 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납품수량·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법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수탁기업 준수사항

법 제25조(준수사항) ③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우수기업 선정·지원

법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의2(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시행규칙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약정서의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운영세칙 제3조(표준약정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표준약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표준약정서는 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적용하며 건설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용역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한다.

③ 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위탁기업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제1항의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규칙 제5조의2 제4호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운영세칙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2007.5.10, 개정 2011.2.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그 밖의 표준계약서 :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하도급계약서(공정위 홈페이지 게재)**

- 건설업(5)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 제조업(15) : 전자업, 자동차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2종), 섬유업, 조선임가공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음식료업, 가구제조업, 화학업, 의료·정밀·광학기기업, 제1차금속업, 출판·인쇄업
- 용역업(12) : 건축설계업, 소프트웨어사업(4종), 광고업(3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방송업, 디자인업(4종), 전시 및 행사업, 엔지니어링활동업, 경비업, 건축물유지관리업, 장비도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표준약정서 규정 '14.2.5일 삭제,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규정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세칙 제4조(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①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별도양식) 1부
2. 최근 1년간 수탁기업 명단(별도양식) 1부

②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면접조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및 현장 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규칙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운영세칙 제5조(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
2.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3.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납품하거나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점 부여
5. R&D 자금지원 시 우대
6.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첨부> 표준약정서(수·위탁 운영세칙 별표1) 1부.

<첨부>

표준약정서

○○○회사 (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위탁·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기본원칙)

- ① 위탁·위탁거래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본약정 및 개별약정)

본 약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위탁·위탁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약정(이하 “개별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본 약정 및 개별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약정의 내용)

- ① 개별약정에는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위탁연월일, 물품등의 명칭·사양·수량·단가, 납품대금의 지급 방법, 결제통화(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및 기준환율(납품 시점, 결제시점, 약정시점 등),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약정의 성립)

- ① 개별약정은 원칙적으로 위탁기업이 제3조의 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수탁기업에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수탁기업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업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위탁기업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약정은 위탁기업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수탁기업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약정의 변경)

-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약정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본 약정 및 개별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약정의 변경 시 위탁기업의 요구로 물품등의 사양,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별도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③ 제1항의 약정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 (발주)

- ① 위탁기업이 개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물품등의 위탁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 (납품방법)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면,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납기 및 장소)

납기란 수탁기업이 개별약정에 의하여 물품등을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일을 말하고, 납품장소는 위탁기업이 물품 등을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하며, 개

별약정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단가결정)

물품등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절한 관리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산업재산권)

- ①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물품등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위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기업의 서면승낙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수탁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 물품등에 관한 제1항에 의한 권리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기업의 책임과 부담으로 위탁기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물품등과 관련하여 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제1항에 의한 권리를 계약기간 중 상호 허여(許與)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자료 임치제도)

- ①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제3의 전문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수탁기업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위탁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상의 영업비밀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
 3. 기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제조방법,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③ 제1항에서 "임치기관"이라 함은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중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을 의미하며 아래의 각호의 것을 수행한다.
 1. 기술자료의 진정성 파악(가독성, 바이러스 감염, 업데이트 여부 등)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
 3.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기술자료 교부
- ④ 위탁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기업은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수탁기업이 보유한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⑤ 임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탁기업이 부담하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⑥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위탁기업이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임치기관은 기술자료를 위탁기업에게 교부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또는 원자재가격 등 물가변동으로 위탁 또는 수탁기업이 목적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위탁기업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이전에 제출된 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대금지급)

- ① 위탁기업은 물품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날에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 ②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위탁기업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업이 등록한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업이 부담한다.

③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적용한다.

제14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업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15조 (검사의 합리화)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납품한 때에는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등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물품등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물품등을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 위탁기업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납품수량·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3. 불합격 사유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비용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⑥ 위탁기업은 검사기간 중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물품수령증 교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한 때에는 물품등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수령증(별첨 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담감액의 금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업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거래정지의 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품질보장 및 납기 엄수)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업은 시설의 개선 및 기술의 향상을 통해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의 위탁을 받은 제품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적격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재위탁)

①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위탁한 물품등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별도로 위탁기업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기업은 본 약정 및 개별약정에 따른 수탁기업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제3자와의 재위탁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물품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유로 '제3자의 선정·약정조건 설정' 등 재위탁거래 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 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등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약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 체결일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업 또는 위탁기업이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약정의 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 ② 제1항에 의한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기간 만료 이전에 체결된 개별약정은 계속 유효하며, 동 개별약정에 대한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약정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기밀의 유지)

-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본 약정 및 개별약정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약정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양측은 본 약정, 개별계약 및 그 부속협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정의 해석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를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은 중재법에 의한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거나, 영 제11조에 의한 수탁·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

- ① 수탁·위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본 약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